

유럽 보험건전성 제도의 비례성 원칙 체계 개선과 시사점

노건업 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

요약

- 유럽집행위원회(EC)는 Solvency II의 적합성 및 단순화를 위해 적용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소형단순보험회사'라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함
 - Solvency II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기준을 연간 총보험료는 15백만 유로 이하, 책임준비금 50백만 유로 이하로 확대할 예정임
 - 보험회사 중 '소형단순보험회사'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정량평가(책임준비금 산출 등), 정성평가(ORSA 등), 보고 및 공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소형단순보험회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여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지급여력제도인 K-ICS에서도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화한 방법(간편법)으로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음
- 국내 보험환경은 유럽과 달라 Solvency II의 '비적용회사' 기준과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을 단순 적용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가 많지 않음
 - 국내 보험회사에 Solvency II 기준 적용 시 비적용회사는 손보 1개 사, 소형단순보험회사는 생보 1개 사 정도만 해당될 수 있음
- 향후 소액단기보험회사 등 다양한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본질(Nature), 규모(Scale), 복잡성(Complexity)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관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K-ICS에서도 이미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등에서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활용을 높이기 위해 Solvency II 사례에 따라 간편법 적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규 설립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 K-ICS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완화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 검토 배경

- 유럽 보험건전성 제도인 Solvency II는 비례성 원칙하에서 설계되었지만, 비례성 원칙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비례성 원칙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비례성 원칙(또는 과잉금지 원칙)은 규제 목적과 그 규제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필요한 규제 수단 간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규제 수단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어야 하고 그 이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 Solvency II는 이전 제도에 비해 복잡하고 규제 비용이 커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이 엄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Solvency II의 적합성 및 단순화를 위해 Solvency II 적용 면제 회사 기준을 확대함¹⁾
 - Solvency II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기준이 현재는 연간 총보험료 5백만 유로 이하, 책임준비금 25백만 유로 이하²⁾이나, 연간 총보험료 15백만 유로 이하, 책임준비금 50백만 유로 이하로 확대할 예정임

〈표 1〉 유럽 국가별 Solvency II 미적용 현황

국가명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독일
전체 보험회사 수(a)	84	713	134	187	82	162	402
미적용 보험회사 수(b)	49	237	22	26	11	11	27
비율(b/a)	58%	33%	16%	14%	13%	7%	7%

자료 : EIOPA(2020), "Background document on the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

- 또한 공정한 규제 체제 속에서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가 시장 내에서 공존하기 위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여 ‘소형단순보험회사’(Small and non-complex undertakings)라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함³⁾

1) 유럽의회 홈페이지(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4-0295_EN.html#top); Amendments to the Solvency II Directive(2024. 4. 23)

2) Directive 2009/138/EC, Article 4에서 ① 연간 수입보험료가 5백만 유로 이하 또는 재보험계약과 SPV로부터 회수가능한 책임준비금이 25백만 유로 이하임, ② 보험회사가 그룹에 속하는 경우, 재보험계약과 SPV로부터 회수가능한 책임준비금이 전체 그룹의 25백만 유로 이하임, ③ 보험회사의 재보험 영업에서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50만 유로 또는 재보험계약과 SPV로 회수가능한 책임준비금이 250만 유로를 초과하지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보험영업이 총 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거나 재보험계약과 SPV로 회수가능한 책임준비금이 10% 이상인 경우임, ④ 보험회사의 영업은 배상책임(Liability), 신용(Credit), 보증보험(Suretyship)을 포함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제시함

3) Council of European Union(2024),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9/138/EC as regards proportionality, quality of supervision, reporting, long-term guarantee measures, macro-prudential tools, sustainability risks, group and cross-border supervision and amending Directives 2002/87/EC and 2013/34/EU"

- 보험회사 중 ‘소형단순보험회사’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정량평가(책임준비금 산출 등), 정성평가(ORSA 등), 보고 및 공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변경될 기준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승인되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나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함
 - 유럽의회에서 Solvency II 개정안이 승인(2024. 4. 23)되어 저위험보험회사(Low-Risk Profile Undertakings; LRPUs)는 ‘소형단순보험회사’(Small and non-complex undertakings)로 명칭을 변경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EIOPA에게 ‘소형단순보험회사’와 소형단순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비례성 원칙 적용 시 감독당국 승인조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 제시를 2025년 1월 말까지 요청함⁴⁾
 - 논의자료에서는 ‘소형단순보험회사’보다는 소형단순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비례성 원칙에 대해 주로 논의함
- 국내 지급여력제도인 K-ICS에서도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화한 방법(간편법)으로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적용 최소 1개월 전에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입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간편법 적용 대상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금리위험액 등이 해당됨
 -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간편법 적용 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원화 할인율 적용, 현행추정부채, 보험계약대출, 금리위험액에 결정론적 시나리오 적용 등이 가능함
- 보고에서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소형단순보험회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여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소형단순보험회사(Small and non-complex undertakings)

- 보험회사가 ‘소형단순보험회사’로 분류되면 보고, 공시, 지배구조, 책임준비금 계산, ORSA, 유동성위험 관리 등에 대해 자동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음⁵⁾
 - 사업성과, 지배구조체계, 위험프로파일, 자본관리 등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서 제출주기를 연간에서 3년으로 완화함

4) EIOPA(2024), “CONSULTATION PAPER on technical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roportionality framework under Solvency II”

5) 문단 35(5a)[보고], 문단 41[지배구조], 문단45(1b)[시스템위험고려], 문단45(5)[ORSA], 문단 45a(5)[기후변화 시나리오], 문단51(6)[공시 주기], 문단51a(1)[재무상태표 감사], 문단77(7)[책임준비금 평가]. 문단144a(4)[유동성위험관리]

- 지급여력 및 재무공시 보고서(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s; SFCR)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공시 주기는 연간에서 3년으로 완화함
 - SFCR에서 공시한 재무상태표의 감사(Audit) 의무를 면제함
 - 지배구조에 대한 정기적 내부 리뷰 주기를 연간에서 5년으로 완화함
 - 옵션 및 보증이 있는 계약의 책임준비금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가 아닌 결정론적 시나리오(Prudent deterministic valuation)를 적용할 수 있음
 - ORSA 평가를 연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분석도 제외함
 - 유동성위험에 대한 관리계획 제출 의무 없음
- ‘소형단순보험회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연간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외사업보험료, 합산비율, 금리위험액, 비전통적 투자⁶⁾비중, 특정보험종목,⁷⁾ 재보험사업으로 구분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책임준비금 및 연간보험료의 종목별 비중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손보 겸영회사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별로 세부기준이 상이함
 -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중 생명보험 비중이 20% 이상이고 연간보험료 중 손해보험 비중이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 이와 같이 생명보험회사로 분류되면 책임준비금, 해외보험료, 금리위험액, 비전통적 투자비중, 재보험사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함

6) 전통적 투자는 채권, 주식, 현금, 현금과 동일한 예금으로 구성되며, 총자산은 파생상품은 포함하나 변액보험자산과, 자가 사용을 위한 부동산, 플랜트, 장비 및 자가 사용을 위해 건설 중인 부동산 제외함

7) 자동차 포함한 육상차량보험(Land vehicle), 철도차량보험(Railway rolling stock), 항공보험(Aircraft), 적하보험(Goods in transit), 신용보험(Credit), 보증보험(Suretyship)

〈표 1〉 소형단순보험회사 적용 기준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손보 겸영회사
		책임준비금 중 생보 비중 20% 이상 그리고 연간보험료 중 손보 비중 40% 이하	책임준비금 중 생보 비중 20% 미만 그리고 연간보험료 중 손보 비중 40% 이상	책임준비금 중 생보 비중 20% 이상 그리고 연간보험료 중 손보 비중 40% 이상
규모 기준	연간보험료	-	1억 유로 이하	1억 유로 이하
	책임준비금	10억 유로 이하	-	10억 유로 이하
	해외보험료	2천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 10% 이하	2천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 10% 이하	2천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 10% 이하
위험 기준	합산비율	-	과거 3년 평균 합산비율 100% 미만	과거 3년 평균 합산비율 100% 미만
	금리위험액	책임준비금 5% 이하	-	책임준비금 5% 이하
	비전통적 투자비중	비전통적 투자 20% 이하	비전통적 투자 20% 이하	비전통적 투자 20% 이하
	특정 보험종목	-	손보 연간수입보험료 30% 이하	손보 연간수입보험료 30% 이하
	재보험사업	연간수입보험료의 50% 이하	연간수입보험료의 50% 이하	연간수입보험료의 50% 이하

자료 : Council of European Union(2024)

- ‘소형단순보험회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요청 후 일정 기간(2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전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소형단순보험회사’의 모든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향후 3년 이내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게 될 전략적 변화를 계획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함
 - 해당 기업이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례성 기준, 특히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해 단순화된 방법 사용 계획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감독당국은 불승인인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하며, 일정 기간(2개월)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기간 경과 이전에 감독당국이 승인한다면 해당일부터 ‘소형단순보험회사’로 분류됨
- ‘소형단순보험회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함
 - 비준수사항이 2년 연속 지속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감독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3번째 회계연도부터 ‘소형단순보험회사’로 분류되지 않음

3. 국내 보험회사 평가

- 우선 Solvency II의 비적용회사 기준에 따라 K-ICS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olvency II의 비적용회사 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를 평가함
 - Solvency II의 현행 기준을 원화로 환산(1유로=1,500원)하면 연간 총보험료는 75억 원, 책임준비금은 375억 원이며 개정안을 원화로 환산하면 연간 총보험료는 225억 원, 책임준비금은 750억 원임
- 2023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적용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으며 손해보험회사 중 국내원수보험회사 대상으로 적용하면 1개 사가 해당됨
 - 손보 A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연간 총보험료는 69억 원, K-ICS 기준 책임준비금 23억 원으로 비적용기준을 만족하나, 2024년 6월 말 보험료가 134억 원으로 Solvency II의 현행기준(75억 원)을 초과함
 - 만약 손보 A사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개정안의 비적용기준(225억 원)을 적용하더라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소형단순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회사 또는 디지털보험회사에 대해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않아 디지털보험회사 대상으로 검토함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제한되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은 제외⁸⁾되어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위험이 낮아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⁹⁾만 된 상태로 본허가 준비 중임
 - 디지털보험회사는 법적인 분류가 아닌 사업모형상 분류이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소형단순보험회사'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보험회사 5개사에 대해 '소형단순보험회사'의 규모 기준인 연간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면 3개 사(생보 A사, 손보 A사, 손보 B사)는 기준을 충족하나 2개 사(손보 C사, 손보 D사)는 충족하지 못함
 - 규모 기준으로 연간보험료 1,500억 원(1억 유로) 이하, 책임준비금 1조 5천억 원(10억 유로) 이하를 적용함
 - 생보 A사는 책임준비금이 5,800억 원, 손보 A사와 B사는 연간보험료가 각각 69억 원, 590억 원으로 기준을 충족함
 - 손보 C사는 연간보험료가 4,120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함
 - 손보 D사의 책임준비금은 1조 620억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나 연간보험료가 5,710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함
 - 책임준비금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비중이 71%, 연간보험료 중 일반손해보험 비중이 64%로 소형단순보험회사 적용에 있어 생손보겸영회사 기준을 충족함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2. 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9. 5), "마이브라운(주)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 마이브라운(주)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표 2〉 국내 디지털 보험회사 평가(규모 기준)

(단위: 십억 원)

구분	생보 A사 (생명보험회사)		손보 A사 (손해보험회사)		손보 B사 (손해보험회사)		손보 C사 (손해보험회사)		손보 D사 (생손보 겸영회사)	
	현황	평가	현황	평가	현황	평가	현황	평가	현황	평가
연간보험료	211	비대상	6.9	○	59	○	412	X	571	X
책임준비금 (K-ICS 기준)	580	○	2.3	비대상	85	비대상	142	비대상	1,062	○

자료 : 2023년 말 기준 각사 경영공시; 『금융통계월보』

○ 규모 기준을 충족한 디지털보험회사 3개 사에 대해 위험 기준(평균 합산비율, 금리위험액 비중, 비전통적 투자 비중, 특정 보험종목 비중)을 평가하면 1개 사(생보 A사)만 기준을 충족함

- 위험 기준은 평균 합산비율 100% 미만, K-ICS 책임준비금 중 금리위험액 비중은 5% 이하, 비전통적 투자 비중¹⁰⁾ 20% 이하, 특정보험종목 비중은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30% 이하를 적용함
- 생보 A사는 책임준비금 대비 금리위험액 비중 2.5%, 비전통적 투자 8.4%로 평가 기준을 만족함
- 손보 A사와 손보 B사는 평균 합산비율이 모두 100%를 초과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 손보 B사는 평균 합산비율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투자비중이 34.7%로 기준을 초과함

〈표 3〉 국내 디지털 보험회사 평가(위험 기준)

(단위: %)

구분	생보 A사 (생명보험회사)		손보 A사 (손해보험회사)		손보 B사 (손해보험회사)	
	현황	평가	현황	평가	현황	평가
평균 합산비율	-	비대상	164,484	X	182	X
책임준비금 대비 금리위험액 비중	2.5	○	0.6	비대상	0.0	비대상
비전통적 투자비중	8.4	○	0.9	○	34.7	X
특정 보험종목 비중 (자동차보험)	-	비대상	0.0	○	0.0	○

주: 합산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값임

자료: 2023년 말 기준 각사 경영공시; 『금융통계월보』

10) 비전통적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에서 현금, 주식,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 부동산, 대출채권을 적용함

- Solvency II의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을 국내 디지털보험회사 5개 사에 대해 적용한 결과 1개 사(생보 A사)만 기준을 충족함
 - 다만, 손보 A사의 경우는 규모가 작아 '소형단순보험회사'보다는 Solvency II 비적용회사 기준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4. 시사점

- 유럽의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는 보험회사의 규모 및 위험정도에 따라 '비적용회사', '소형단순보험회사'를 구분하여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회사 중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이 일정 규모 이하면 Solvency II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 제시됨
 - 보험회사가 '소형단순보험회사'로 분류되면 책임준비금 산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 허용되며 ORSA 평가, 보고 및 공시 등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국내 보험환경은 유럽과 달라 Solvency II의 '비적용회사' 기준과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을 단순적용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가 많지 않음
 - 국내 보험회사에 Solvency II 기준 적용 시 비적용회사는 손보 1개 사, 소형단순보험회사는 생보 1개 사 정도만 해당될 수 있음
- 향후 소액단기보험회사 등 다양한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본질(Nature), 규모(Scale), 복잡성(Complexity)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관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K-ICS에서도 이미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등에서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유럽 사례와 같이 간편법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규 설립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 K-ICS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완화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젤III 규제를 3년간 유예하여 바젤 I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바젤III를 적용함¹¹⁾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5. 15),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III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 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